

OUTSOURCE2VIETNAM.COM이 제공하는 알기 쉬운 참고 자료

업무상 저작물 계약과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체결 전 베트남 하도급업체와 바이어가 알아야 할 사항

본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해외 바이어와 베트남 공급업체 간의 아웃소싱 관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결과물이 납품된 후, 실제로 누가 그 소유권을 갖는가? 이 부분은 명확히 다루지는 경우가 드물며, 저희가 접하는 분쟁 중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O2VN은 법률 회사가 아닌 디렉터리 플랫폼입니다 — 하지만 아래에서는 이 문제의 실질적인 구조와, 도급 관계에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핵심적인 구분

작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누가, 어떤 관계 하에서 그것을 만들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직원

업무 범위 내에서 창작된 지식재산권은 자동으로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는 표준 고용법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무 기술서와 고용 계약서가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계약직 인력(아웃소싱 공급업체 포함)

소유권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권리 양도를 명시한 서면 합의가 없으면, 계약자는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허점입니다.

베트남 아웃소싱에서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베트남 하도급 관계 —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디자인, BPO — 는 고용이 아닌 독립 계약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자동 소유권 규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어가 베트남 공급업체에 작업을 의뢰했는데 계약서에 명시적인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이 없다면, 공급업체는 전액 지불 후에도 자신이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베트남 하도급업체와 협업하는 모든 바이어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 시작된 후가 아니라 —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시한 서명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공급업체 역시 자신이 무엇을 양도하고 무엇을 보유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고객 프로젝트에서 구성 요소, 템플릿,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업무상 저작물 계약서가 명확히 규정해야 할 사항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다섯 가지 기능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01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 작업물이 명시적으로 “업무상 저작물”로 표시됨
- 모든 권리, 초안, 예비 버전이 발주 측에 이전됨
- 계약자는 허가 없이 재판매·재사용할 권리를 포기함

02 무엇이 납품되는가

- 명확히 정의된 업무, 산출물, 마일스톤, 마감일
- 지급 금액, 지급 일정, 경비 처리 방식

03 위험 보호 장치

- 명확한 기간이 정해진 비밀유지 조항
- 제3자가 소유권을 다룰 경우의 손해배상 조항
- 양측의 책임 한도
- 해당되는 경우 보험 요건
- 작업물이 독창적이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04 계약 관계 종료

- 계약 해지 조건 및 사전 통지 기간
- 종료 시 자료 및 접근 권한의 처리 방식
- 종료 후 고객 또는 직원에 대한 유인 금지 조항

05 세부 조항

- 준거법 및 관할권 — 국경 간 거래에서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명시
- 분쟁 해결 방식(조정, 중재 등)
- 불가항력 조항
-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하다는 조항
- 양측의 서명(전자서명도 유효함)

결론

직원은 기본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계약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그리고 베트남 아웃소싱 계약의 사실상 대부분이 계약자 범주에 해당합니다. 모든 계약 관계는 각각 명시적이고 서명된 지식재산권 양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출발점이 되는 기본 구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해당 관할권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